

【별표 10-5】

징 계 양 정 기 준
(음주운전 관련)

(제43조 관련)

음주운전 유형		처리기준
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	정직-감봉
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인 경우	정직
	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 이상인 경우	해고-정직
	음주측정 불응의 경우	해고-정직
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	해고-정직
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	해고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정직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해고-정직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	해고-정직
	사망사고의 경우	해고
	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-정직
		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
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	해고
	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	해고-정직
<p>※ 비고</p> <p>1. "음주운전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.</p> <p>2. "음주측정 불응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.</p> <p>3. "운전업무 관련 공무원"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근로자를 말한다. 다만,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</p> <p>4.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동 규정이 개정·시행한 날부터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.</p>		